

## (주)머스트자산운용 신용정보 활용체제

제정 : 2015.12.11  
1차 개정 : 2017.03.14  
2차 개정 : 2017.07.24  
3차 개정 : 2021.07.23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신용정보처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# I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#### 1. 이용목적

-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마케팅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#### 2. 신용정보의 종류

##### 가. 식별정보

-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 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 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##### 나. 신용거래정보

###### 1) 개인신용거래정보

-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 대지급정보,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

###### 2) 기업신용거래정보

-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 대지급정보, 어음 수표 부도정보, 대출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

##### 다. 금융질서문란정보

-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##### 라. 신용능력정보

- 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##### 마. 공공기록정보

- 국세, 지방세, 관세, 과태료,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### II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#### 1. 제공대상자

- 가. 신용정보 집중기관\*, 신용정보회사\*\*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\*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, 전국은행연합회,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

\*\*신용정보회사 : 나이스신용평가정보(주)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, 서울신용평가정보(주) 등

나. 한국금융투자협회, 금융감독원,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거래소, 금융투자업자, 펀드사무수탁사, 등 동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공 가능한 기관 등
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가.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- 나.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
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가. 식별정보, 나. 신용거래정보, 다. 금융질서문란정보, 라. 신용능력정보

III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- 1. 보유 및 이용기간 :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동안 보유 및 이용할 수 있고, 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이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는 상기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변동 가능.
- 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하며, 종이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하거나 소각하여 파기.

IV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:

수탁자	위탁 업무
우리펀드서비스(주)	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

V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- 1.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 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2.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 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3.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  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4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  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VI.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인 등

- 1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:
  - 준법감시인 박희정
  - 연락처 : 02-578-5080
  - E-mail : info@mustinvestment.com

부칙(2015.12.11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15.12.11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17.03.14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17.03.14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17.07.24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17.07.24 부터 시행 한다.

부칙(2021.07.23)

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1.07.23 부터 시행 한다.